

## II. 성폭력 예방과 대처 지침



성폭력 예방과 대처 지침(이하 지침)은 교회 내에서 발생하는 성폭력 예방과 대처를 위한 주요 원칙이며, 교회와 노회, 총회는 이 내용을 반영하여 사건을 처리하여야 한다.

### 1. 목적

이 지침은 2018년 총회에서 제정된 성윤리 강령의 구체적 실현을 통해, 교회 내 성폭력을 예방하고, 가해자 처벌과 교정, 피해자와 피해사실을 주장하는 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이하 피해자 등)을 보호하며, 교회 공동체의 온전한 회복을 목적으로 한다.

### 2. 적용범위

- ① 이 지침은 한국기독교장로회 소속 노회와 교회, 기관에 등록된 구성원(목회자와 신도, 기관과 유관 기관의 모든 임원, 직원, 자원봉사자 포함)에게 적용된다.
- ② 한국기독교장로회 소속 노회와 교회, 기관은 성폭력에 대해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한다.

### 3. 성폭력의 정의

성폭력이란 권력이나 힘의 차이를 이용하여 상대방의 동의 없이 상대의 '성적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언어적, 신체적, 정신적 모든 행위를 말한다. 성폭력에 대한 불안감이나 공포심, 그로 인한 행동제약도 간접적인 성폭력이라 할 수 있다.

### 4. 교회 내 성폭력의 정의

\* 교회 내 성폭력이란 예배, 목회적 돌봄과 관련업무 등에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항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교회의 목회자나 지도자가 종교적인 특수성이나 자신의 권위를 이용하여 성도나 동역하는 목회자(목사, 전도사) 혹

은 직원에게 성폭력 또는 유사한 성적 행위를 행하는 것을 말한다. 즉 교회나 기독교기관, 선교단체 등 기독교 공동체의 구성원 사이에 발생하는 성폭력을 말하며 개인의 쾌락을 위하여 자신의 권위와 권력을 남용하여 착취하거나 신뢰의 관계를 오용하여 상대방부터의 이점을 얻는 등 기독교의 윤리 원칙을 위반하는 일이다. 특히 목회적 돌봄 하에 있는 사람들에게 신앙행위를 빙자한 성적 행위는 모두 성폭력이며 이는 가해자의 물리적 힘의 행사나 피해자의 저항 유무와 관계없다.

###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 방식에 따른 성폭력의 유형

- ① 강간 : 사람을 폭행 또는 협박으로 간음하거나, 동의하지 않았는데 성적자기결정권을 무시하고 간음한 행위,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간음한 행위.
- ② 강간 미수 : 강간을 시도했으나 강간죄에 해당하는 목적을 이루지 못한 행위
- ③ 성추행·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 자신의 성적 욕망으로 상대방의 동의 없이 신체를 접촉한 행위.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신체를 접촉한 행위
- ④ 성희롱 : 상대방 의사에 관계없이 성과 관계되는 말이나 행동을 하거나 시각적 자료를 게시 또는 전송하여 상대방에게 불쾌하고 굴욕적인 느낌을 주는 행위
- ⑤ 통신매체 이용 음란 :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행위
- ⑥ 카메라 등 불법촬영 :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해 촬영하거나, 촬영 당시에는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여도 사후에 그 의사에 반하여 그 촬영물을 반포, 판매, 임대, 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 상영하는 행위
- ⑦ 지속적 괴롭힘(스토킹) :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으로 접근을 시도하여 면회 또는 교제를 요구하거나 지켜보기, 따라다니기, 잠복하여 기다리기 등의 행위를 하는 것. 통신과 사이버 상 괴롭힘, 불시침입, 소문유포, 폭력, 사진과 동영상 촬영, 유포, 자해, 협박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 ⑧ 위에 적시하지 않은 범죄 행위는 사회의 성폭력 특례법에 따른다.

###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성희롱 대표 유형

언어 성희롱	상대방의 의사와 상관없이 음란한 농담이나 말을 하는 행위. 외모에 대한 성적인 비유나 평가 행위. 성적인 사생활을 묻거나 성적인 내용의 정보를 유포하는 행위. 임신, 출산, 피임, 생리현상 등과 관련하여 성적인 비유나 행위를 묘사하는 행위 등
육체적 성희롱	상대방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신체를 접촉하거나 특정 신체부위를 만짐으로 피해자에게 성적 굴욕감과 혐오감을 주는 행위 등
시각 성희롱	상대방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눈으로 인지 가능한 행동을 통해 성적인 혐오감이나 불쾌감을 주는 행위. 외설적인 사진, 그림, 낙서, 음란출판물 등을 게시하거나 보여주는 행위(스마트폰이나 컴퓨터 등의 매체 전송 포함). 성과 관련된 자신의 특정 신체부위를 고의로 노출, 만지는 행위 등
환경형 성희롱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언동으로 특정한 또는 공동체의 업무능력, 신앙생활을 저해하는 행위. 힘이 있는 자(임면, 지위, 근로조건 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자 등)가 언동을 통해 불쾌감이나 성적 굴욕감을 주는 행위. 일하는 환경, 혹은 신앙생활의 환경을 불쾌하고 열악하게 하기 위하여 성적인 언동을 하는 행위

### 언어 성희롱 예시 / 아래 세 줄은 성차별 예시

- 우리 ○○씨, 우리 이쁜이. 내 애인이야
- 우리 애인! 어제 잘 들어갔어?
- 아가씨 엉덩이라 탕탱하네.
- 몸매 진짜 좋다. 누가 보면 처녀인 줄 알겠어.
- 남자는 허벅지가 튼실해야 하는데, 좀 부실하다.
- 남자 전도사님이 그거 먹고 힘쓸 수 있겠어요?
- 차는 젊은 여자가 타줘야 제 맛이지... (여자 목사님이 커피 타주니 더 맛있네요.)
- 요즘 왜 이렇게 살찐어? 그러가지고 남친(여친)이 좋아하겠어?
- 믿음이 좋은 청년이 예쁜 자매와 결혼하는 거야.
- 빨리 결혼해서 순풍순풍 애를 낳는 것이 자연 전도입니다.
- 여신도들이 가득하니 꽃밭에 있는 것 같습니다.
- 남남북녀야, 여자는 북쪽에서 사는 사람들이 예쁘지.
- 찬양팀 여학생들에게 “머느리감을 찾고 있다.”
- 여성은 약하니까, 누가 도와주세요.<sup>2)</sup>
- 자신의 첫 목회지를(그냥 첫 목회지라 말하지 않고) ‘처녀 목회’ 라고 설명하는 것.

2) 한신대학교 신학대학원 성정의위원회 ‘성차별 발언 피해’ 설문조사 참조, 2019.

### 육체적 성희롱 예시

- 격려한다고 어깨를 두드리며 어깨에 손을 올리는 행위
- 안마를 해준다고 어깨를 만지는 행위
- 허리에 손 두르는 행위
- 손으로 엉덩이를 톡톡치는 행위
- 친한 척 포옹하거나 뒤에서 껴안는 행위
- 입맞춤, 혹은 손에 입맞춤하는 행위
- 테이블 아래에서 발로 다리를 건드리는 행위
- 2차 가자며 팔짱을 끼고 억지로 차에 태우는 행위
- 일하고 있는데 의자를 끌어와 몸을 밀착하는 행위
- 자신의 무릎에 억지로 앉히는 행위
- 가슴을 스치고 지나가는 행위
- 안마나 애무를 강요하는 행위
- 약수를 하며 상대의 손바닥을 자신의 손가락으로 긁는 행위 등

## 5. 피해자와 가해자의 서로 다른 심리<sup>3)</sup>

	피해자	가해자
성적 표현	성적수치심으로 느낌	친근함을 표시한 것
성적 농담	비상식적 언어표현으로 감정이 상하고 수치심 느낌	분위기를 부드럽게 하기 위함
이성 동료에 대해	이성보다는 동료로 생각	동료보다는 이성으로 생각
성희롱 발생 시	인격적 모독!	그럴 수도 있지!
문제제기하는 경우	이렇게라도 내 감정을	괜한 문제를 일으킨다. 너무 예민하다.
가해자 처벌	당연한 일!	뭘 그렇게 까지 해!

3) 2019 총회교육원 포괄적 차별예방 계속교육 <젠더감수성 교육> 에서, 임정혁

## 6. 교회 성폭력의 특성

신앙공동체 안에서 발생하는 성폭력은 특성과 유형이 사회의 성폭력과 다른 측면이 있다. 이 지침서에서 말하는 교회 성폭력은 교회나 기독교 단체, 신학교 등 기독교 신앙을 매개로 모인 공동체 안에서 발생하는 각종 성폭력을 포함한다. 이는 교회의 지도자나 목회자가 종교적인 특수성이나 자신의 권위를 남용하여 신도나 동료 목회자(부목사, 전도사 등)에게 행한 성폭행, 성추행, 성희롱을 말한다. 교회 성폭력에 대한 분명한 정의나 유형이 정립되어 있지 못한 상황이지만, 한국여신학자협의회 부설 기독교여성상담소가 2016년에서 2018년 사이의 교회 성폭력 사례를 근거로 정리한 교회 성폭력의 특성과 유형을 바탕으로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sup>4)</sup>

- (1) 교회 성폭력은 목회자를 비롯한 장로와 교사 등 교회 지도자와 신도 간의 절대적인 위계관계 속에서 발생하며, 그동안 지속적으로 쌓아온 신뢰관계가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피해자들은 교회 지도자의 성폭력 행위에 대해 이상하게 느끼면서도 거부하지 못하고 지속적으로 당하게 된다.
- (2) 교회 성폭력은 목회자 자신을 영적인 부모로 칭하며, 자신의 행위를 성적인 행위가 아닌 것처럼 위장하는 식으로 성폭력이라고 판단하기 어렵게 만드는 교묘한 장치를 통하여 이루어진다.
- (3) 교회 성폭력 피해자들은 가해 목회자의 속임수와 '영적 길들임'으로 인해 목회자를 특별한 방식으로 섬기고 있다고 생각하게 되고, 목회자에게 성폭력 피해를 입었음에도 주의 종에게 큰 은혜를 입었다고 믿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성폭력은 대부분 강간이 아닌 합의된 성관계처럼 보이는 형태를 띠게 된다.
- (4) 교회 성폭력은 쉽게 발생할 수 있는 것에 비해서 가해자에 대한 징계나 중재과정이 교회법으로 명문화된 경우가 거의 없으므로 그 법적 해결은 매우 어렵다. 교회에 은혜가 되지 않는다는 핑계로 문제를 덮어버리고자 하는 정서는 그 해결을 더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

4) 한국여신학자협의회 부설 기독교여성상담소, 『교회성폭력 예방 지침서』 (여성신학사, 2018), 28-48.

- (5) 교회 성폭력은 처리과정에서 교회의 분파 싸움에 휩쓸려 피해자의 인권이 실종되는 경우가 많다. 피해사실이 드러난 후, 피해자는 자신의 피해사실을 알렸다는 이유로 사탄 마귀라고 정죄되거나 주의 종을 마음 아프게 하면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다는 등의 비난을 받고 교회에서 쫓겨나기도 한다. 뿐만 아니라 교회 내 분파에 휘말려 이용되다가 아무런 지원도 받지 못한 채 이중 삼중의 고통을 당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 (6) 교회 안에서 목회자에 의한 성폭력은 장기간 지속될 수 있고 여러 사람이 한 교회 안에서 피해대상이 되기도 한다. 왜냐하면 교회에서는 목회자와 신도의 관계가 다양한 교회활동을 통해서 지속되며, 가해자인 목회자는 피해자들을 길들여 성폭력을 신앙의 행위로 이해하도록 하여 저항하지 않는 동안 지속적으로 성폭력을 행하기 때문이다.
- (7) 교회 성폭력 피해자의 후유증은 영적인 어려움까지 추가되어 일반 성폭력 피해자가 겪는 후유증보다 더 심각하다. 믿고 순종하던 목회자에 대한 배신감과 분노를 느끼면서도, 주의 종을 비난해서는 안 되며 주의 종을 용서하라는 주위의 강요가 있기에 피해자를 더욱 혼란스럽게 만든다. 자신의 잘못이라고 자책하거나 이런 일을 당한 것은 하나님이 자신을 버렸기 때문이라고 좌절하기도 한다. 신앙에 대한 회의로 교회공동체를 떠나게 만드는 결과를 빚기도 한다.
- (8) 교회 성폭력은 피해자 개인의 삶과 종교적 삶을 파괴하는 데 그치지 않고 교회공동체를 파괴한다. 성폭력 피해사실이 알려지면 거의 대부분 가해자는 자신의 행위를 부인한다. 교인들은 가해자와 피해자를 옹호하는 그룹으로 나뉘고, 교회공동체는 분란에 쌓이게 된다. 교인들도 서로 불신하고 자신들의 입장을 내세우며 분쟁에 휘말리게 된다.